

교육대학원 장학지급기준표

2019.03.04.

1. 학비감면 종류

| 구분 | 대 상 자 | 인원 | 금액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직원장학 | A 현직 - 어린이집, 유치원원감, 원장 - 초·중등교사, 교감, 교장 (방과 후 교사, 인턴교사, 상담사 제외) - 장학관, 장학사, 교육연구관, 교육연구사 | 대상자 | 수업료의 30% | |
| | B 현직 - 어린이집, 유치원교사, - 초, 중등 기간제 교사 | | | 가계곤란장학 |
| 특별장학 | A - 아주대학교 교직원 - 학교법인 대우학원 직원 | 대상자 | 수업료의 50% | 교직원장학 대우학원장학 |
| | B -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- 아주자동차대학 교직원 - 아주대학교 연구(조)원 | 대상자 | 수업료의 40% | |
| | C - 현직 공무원(의무복무자 제외) - 국회의원 및 시/도의회 의원 - 전국대학(교) 교직원 | 대상자 | 수업료의 30% | |
| 가족장학 | -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, 형제 및 부모 자녀 중 1인 | 대상자 | 수업료의 50% | 학기 중 동시 재학 기준 |
| 동문장학 | - 본 교육대학원 졸업자로서 재입학한 자 | 대상자 | 수업료의 40% | 장학금 비수혜자 |
| 아주장학 | -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| 대상자 | 수업료의 30% | |
| 교직원 자녀장학 | - 아주대학교 교수 및 정규 직원 자녀 | 대상자 | 수업료의 50% | 2019학년도 입학생 부터 적용 |